

## 교수-자녀간강의수강회피및사전신고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운영규정은 교수-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운영규정에서 “회피라 함은 자녀가 부모(교수)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대상)** 교수-자녀 간 강의수강 및 사전신고 적용 대상은 본교 구성원으로 한다.

**제4조(강의회피)** 부모(교수)의 강의를 자녀가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수강지도를 해야한다.

**제5조(사전신고)**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, 해당 교수는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대상자처리)** ① 불가피하게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담당교수는 출석, 과제 제출,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.

② 해당 학과장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해야하며,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해야한다.

3-3-27~2 제 3편 행 정

**제7조**(위반자 제재조치)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함에도 미신고,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 위 사항을 위반한 교수에 대해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